

공 고

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 61조(인증수수료 등) 및 74조(위원회 위원 및 인증심사원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)에 의거하여 단체표준 인증심사비를 다음과 공고 합니다.

-- 다 음 --

- 1.신규인증 심사비 : 3일심사(사업장 심사 2일, 서비스 심사 1일)
2,000,000원(부가세별도)
- 2.사후관리 심사비 : 2일심사(사업장 심사 1일, 서비스 심사 1일)
1,530,000원(부가세별도)
- 3.적용 시행일 : 2020년 09월 01일 부터

2020년 08월 17일

한국건축물용역업협동조합 이사장

